

이 보도자료는 2018. 12. 20.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
PROSECUTION SERVICE

서울남부지방검찰청

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김범기
전화 02-3219-4323 / 팩스 02-3219-4474

보도자료

2018. 12. 18.(화)
자료문의 : 금융조사제2부
전화: 02-3219-2442
팩스: 02-3219-2585
주최임자: 부장검사 김형록

제 목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들의 비리사건 수사결과

- 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(부장검사 김형록)는 2018. 12. 18. 가상화폐 거래소 '업비트' 운영업체 A사의 임직원 3명을 거래소 운영업무와 관련한 사전자기기록등위작 및 사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하였음
- '업비트' 운영자들은 임의로 생성한 회원계정(ID=8)에 가상화폐 등 자산을 예치하지 않았음에도, 마치 1,221억 원 상당의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후, 이를 통해 35종의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면서 대량 주문을 제출하여 회원들과 거래를 체결시키는 등으로 시장을 교란하였고,
- 약 2개월 동안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과 거래하면서 4조 2천억 원 상당의 '가장매매'1), 254조 5천억 원 상당의 '허수주문'2) 제출을 통해 '가상화폐 거래량 부풀리기'와 '임의적 가격설정 행위'를 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으며,
- 잔고 조작된 위 (ID=8) 계정으로 일반회원인 것처럼 거래에 참여하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국내 B 경쟁업체의 시세보다 높게 유지되도록 하는 주문을 자동 생성케 하는 '봇(Bot)'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등 회원들을 기망하여 비트코인 11,500개를 매도하고 그 대금 1,491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음

1) 동일 거래주체가 동일한 가격, 수량의 매수, 매도주문을 동시 제출하여 서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현재가가 임의로 설정됨과 동시에 거래규모의 외관을 부풀리는 효과 있음

2) 현재가와 일정 간격을 유지한 여러 가격대에서 다수의 주문 제출과 취소를 반복하여 호기창에 많은 회원이 주문을 제출한 것처럼 표시되도록 하여 약 2개월간 그 주문금액 합계가 위 금액에 이룸

② 아울러, 서울남부지검은 2018. 2~5. 기간 중 가상화폐거래소 3곳 임직원들의 유사 형태의 범죄를 수사하여 11명을 기소(7명 구속, 4명 불구속)하여 3명이 1심 유죄가 선고되고, 나머지는 1심 재판진행 중임

○ 위 거래소들도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잔고를 조작한 차명 계정을 통해 거래에 참여하여 회원들로부터 가상화폐 등 자산을 편취하고, 취득한 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반출하여 개인 명의로 가상화폐 투자를 하여 사기, 횡령 등의 범행을 하였음

③ 가상화폐거래소는 실물자산의 이동 없이 전산시스템상으로만 거래가 체결, 완결됨에도, 회원들은 상대방의 거래자산 실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, 거래소 운영자의 거래참여 금지 등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
1

업비트 운영자 사건 개요

① 피고인

- ㄱ○○ [39세, A社 이사회 의장, 최대주주, 前 대표이사]
- ㄴ○○ [42세, A社 재무이사]
- ㄷ○○ [31세, A社 퀀트팀장]

※ A社 : '17. 10. 24. 가상화폐거래소 '업비트' 개장, 미국 소재 B 거래소와 제휴하여 130개 코인 상장, '17년말 ~'18년초 일거래 금액 약 4~6조원(당시 국내 1위)

② 공소사실 요지

- 2017. 9~11.경 가상화폐거래소 '업비트'를 운영하면서, 회원의 거래체결량과 주문제출량을 부풀리는 등 거래의 성황을 가장하여 회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, '업비트' 전산시스템에서 회원계정(ID=8)을 개설한 후, 사실 위 계정에 가상화폐나 현금을 입고한 사실이 없음에도, 마치 1,22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및 원화(KRW)를 위 계정에 입고한 것처럼 '업비트' 전산시스템 조작 [사전자기록등위작]

- 2017. 10. 24.~12. 13. 허위 입력된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35종의 가상화폐 거래에 직접 참여하여, 1) 동일 가격으로 매수, 매도 주문을 동시에 제출하여 상호 거래 체결시키는 ‘가장매매’를 4조 2,670억 원 상당 실행하고, 2) 체결가능성이 낮은 가격대에서 254조 5,383억 원 상당의 허수주문을 제출하고, 3) 회원과 1조 8,817억원 상당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등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‘업비트’ 전산시스템 운영 [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]
- 2017. 10.~12. 잔고내역이 조작된 (ID=8) 계정으로 일반회원인 것처럼 거래에 참여하면서, 비트코인 시세가 경쟁업체인 B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보다 높을 때까지 매수를 반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세를 상승시키는 등 회원을 기망하여 회원 2만 6천여 명에게 비트코인 11,550개를 매도하고 대금 합계 1,491억 원 상당 편취 [사기]

③ 주요 수사경과

- 2018. 4. 수사개시(다른 가상화폐거래소 수사 중 인지)
- 2018. 5. 10~16. ‘업비트’ 사무실 및 압수수색
- 2018. 5~11. 피의자 등 관계인 조사, 전산자료 분석 등 실시
 - 거래소 서버를 압수하여 고객 및 (ID=8)계정의 거래 및 자산보유 정보를 확보
 - 피의자 ㄸ〇〇의 노트북에서 ‘시장조작’ 기획문서 및 ‘봇(Bot) 프로그램’ 등 확보
 - (ID=8)계정의 운용 프로그램 분석 및 실제 매매내역과 대조작업 등 실시
- 2018. 12. 18. ㄱ〇〇, ㄴ〇〇, ㄸ〇〇 각각 불구속기소

※ 편취금액이 크고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나, 회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, 현재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거래소로서 정상 운영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구속기소

거래소	피고인	직업	공소사실 요지	수사 및 재판 경과
G거래소	ㄹ○○ (구속)	대표이사	<p>·2018. 1.경 거래소 내 차명 계정을 생성 후 전산조작을 통해 원화 510억원 상당 허위 충전, 허위충전 원화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450억원 상당 가상화폐 편취 [사전자기 기록위작, 사기]</p> <p>·2018. 1.경 회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가상화폐 450억원 상당을 거래소 외부로 반출하여 다른 거래소에서 개인 명의로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등 유용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손해발생 등 [배임 등]</p>	<p>·'18. 2. 수사개시</p> <p>·'18. 4. 23. 구공판</p> <p>·'18. 10. 18. 판결선고</p> <p>※ 항소심 재판 중</p> <p>※ ㄹ○○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선고 (법원은 고객에게 현실적 재산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)</p>
	ㅁ○○ (구속)	재무이사		
	ㅂ○○	운영이사		
K거래소	ㅅ○○ (구속)	대표이사	<p>·2018. 1.경 거래소 내 차명 계정을 생성하여 전산조작을 통해 가상화폐 500만개, 원화 500억원 등 허위 충전 [사전자기 기록위작 및 동 행사]</p> <p>·2018. 1.경 자기자본이나 가상화폐도 없이 차명 계정 생성 등 비정상 영업을 할 것임에도, 정상적 운영을 할 것처럼 고객을 속여 고객예탁금 317억원 편취 [사기]</p> <p>·2018. 1.경 법인자금 14억원 횡령하여 타 거래소에서 구입한 비트코인 3억 4천만원 상당을 은닉하고, 고객예탁금 175억원을 차명계좌로 반출 후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등 재산상 손해 발생 [횡령, 배임,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등법률위반 등]</p>	<p>·'18. 2. 수사개시</p> <p>·'18. 4. 23. 구공판</p> <p>·'18. 12. 4. 변론종결</p> <p>※ '19. 1. 선고예정</p>
	ㅇ○○ (구속)	감사		
	ㅈ○○	사내이사		
	ㅊ○○	기술이사		
H거래소	ㅋ○○ (구속)	대표이사	<p>·2017. 10. ~ 2018. 1.경 거래소 내 차명계정을 생성한 후 원화 234억원, 가상화폐 339억원 상당을 허위충전하고, 허위충전 자산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가상화폐 102억원 상당, 원화 339억원 상당 편취 [사전자기 기록위작, 사기 등]</p> <p>·2017. 11.~2018. 3.경 회원들의 고객예탁금 230억원 상당을 임의로 타 거래소의 차명계정으로 반출하여 개인 명의로 가상화폐 투자를 하여 재산상 손해 발생 [배임]</p>	<p>·'18. 2. 수사개시</p> <p>·'18. 5. 31. 구공판</p> <p>·'18. 12. 13. 변론종결</p> <p>※ '19. 2. 선고예정</p>
	ㅌ○○ (구속)	사내이사		
	ㅍ○○ (구속)	시스템관리이사		
	ㅎ○○	경영지원본부장		

① 세간의 ‘가장매매, 허수주문 등 시장조작’ 의혹 확인

-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와 감독기관의 부재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지속 제기되던 ‘거래소 내 코인 실물의 존재여부’, ‘거래소의 시세조종과 거래량 부풀리기’ 등 시장조작 의혹이 이번 수사에서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

※ ‘업비트’ 및 재판 중인 3개 거래소가 모두 실물이 없는 자산으로 거래하였고, 그 중 ‘업비트’와 K거래소에서는 가장매매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린 사실이 확인됨

- ‘업비트’가 35종 모든 코인의 상장 초기에 약 10-20일간 지속 실시한 가장매매량은 해당일 전체거래량의 약 40-90% 상당으로, 그 목적은 회원 거래규모와 빈도의 증가를 통한 수수료수입 증대인 것으로 보임

② 매매유인, 가격조작을 위한 일명 ‘봇(Bot)’ 프로그램 운용


- 거래소 운영자들이 사용한 계정은 일명 ‘봇(Bot)’ 계정으로 회원 거래상황과 관련하여 일정한 조건값을 입력하면 그 목적에 따라 자동적으로 대량 주문을 생성하는 일명 ‘봇 프로그램(Bot Program)’으로 확인

※ ‘업비트’ 운영자를 비롯하여 재판 중인 C거래소, K거래소 운영자들도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량의 가상화폐 거래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됨

- ‘업비트’의 경우, 가상화폐 가격이 경쟁업체 B거래소에서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아질 때까지 매수주문을 계속 제출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경쟁업체보다 대체로 높은 가상화폐의 가격 유지

※ 가상화폐는 여러 거래소에서 동시에 거래되므로, 특정인의 가격결정력이 미미하다는 견해도 있으나, 가상화폐 시세는 거래소 별 수급상황에 따라 개별 결정되므로 상시적 가격차가 발생 가능(2017년말의 일명 ‘김치프리미엄’ 현상은 이러한 사실 반증)

③ 회원들과의 거래체결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

- 거래소가 거래량, 주문수량 등 시장정보를 조작하고, 회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회원으로 가장하여 은밀히 거래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사기죄로 적극 의율
- 법원은 C거래소 사건 1심 재판에서 (회원들에 대한 지급불능사태가 없었음에도), ‘허위충전된 자산으로 매매거래를 한 것은 적극적 기망’이며, ‘고객들은 거래소 측이 당사자로 거래에 참여하는 사실을 알았다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’이라는 취지로 사기죄 성립³⁾ 인정 

3) ‘C 거래소’ 사건 판결문 발췌 (2018. 10. 18. 선고 남부지법 2018고합182 판결)

- (중략) 고객들은 거래소에 제출된 매수주문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, 피고인들이 진실에 반하여 허위 충전된 KRW 포인트를 이용하여 가상화폐의 매매거래를 성사시켰다면 그 자체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.
-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고객들은 (중략) 피고인들의 KRW 포인트 충전이 형법상 범죄인 사전자 기록등위작 및 동 행사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해당 거래소에서 가상화폐의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.
- (중략) 임의로 허위충전하여 매수주문을 제출할 수 있다면 피고인들이나 회사는 아무런 제한없이 매수주문을 제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거래소 내에서의 시세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(중략) 임원들이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까지 할 가능성도 있다. (중략) 특히 국내에는 C거래소 이외에도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경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고객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많았다.
- 고객들로서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C거래소 회사나 그 임직원이 그 명의 또는 계산으로 매매거래의 당사자가 된 것을 알았다더라면 그러한 거래로 나아가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. (중략)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 거래의 중개에 그치지 않고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보다는 거래소의 이익이 우선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.